윤리강령 실천지침

D&K켐텍

D&K켐텍

주식회사 디앤케이켐텍

제·개정 이력

D&K켐텍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본 지침은 회사의 윤리경영 이념을 구체화하고, 임직원이 일상 업무와 의사결정 과정에서 직면하는 윤리적 갈등과 행동 기준에 대한 명확한 원칙을 제공함으로써 건전하고 투명한 기업문화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 범위)

본 지침은 회사에 소속된 모든 임직원에게 적용되며, 본사·연구소·공장 및 현장 사업장 등 전 근무지의 업무 수행 과정에 공통으로 적용된다.

제 3 조 (용어의 정의)

1. **금품:** 금전(현금, 상품권, 이용권 등),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및 기타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2. **향응·접대:** 식사, 주류 접대, 골프, 공연 관람, 여행 지원 등 편의 제공을 말한다.
3. **이해관계자:**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직간접적인 권리나 이익에 영향을 받는 고객, 협력사, 주주, 공공기관 및 임직원 개인 등을 의미한다.
4. **통상적인 수준:** 사회 통념상 보편타당하게 인정되는 건당 [5 만 원] 이하(또는 청탁금지법 등 관련 법령 기준)의 간소한 수준을 말한다.

제 2 장 공정한 직무 수행 및 부정행위 방지

제 4 조 (법규 및 사규 준수)

1. 임직원은 국내외 관련 법령, 정관 및 제반 사규를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2. 과거의 관행이나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를 이유로 법규 및 규정 위반 행위를 정당화할 수 없다.

제 5 조 (금품 및 향응 수수 금지)

1.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협력사 등 이해관계자로부터 일체의 금품, 향응, 접대, 편의를 요구하거나 수수해서는 안 된다.
2. 업무상 불가피하게 통상적인 수준의 식사 또는 기념품을 제공받은 경우, 관련 부서(윤리경영 주관부서)에 사전 또는 사후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3. 수수 금지 금품을 불가피하게 전달받은 경우, 지체 없이 제공자에게 반환하거나 주관부서에 반납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 6 조 (이해상충 방지)

1. 임직원은 회사와 개인 간의 이해가 상충되는 어떠한 행위나 관계도 형성해서는 안 된다.
2. 직무상 영향력을 이용하여 본인, 친인척 또는 지인이 운영하는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특혜를 부여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한다.
3. 회사의 자산, 인력, 영업비밀 등을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사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제 3 장 현장·업무 프로세스의 투명성

제 7 조 (정직한 기록과 보고)

1. 임직원은 생산, 품질, 재고, 구매, 안전, 인사, 재무 등 모든 업무 데이터를 사실에 입각하여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작성해야 한다.
2. 목표 달성이나 실적 과시, 책임 회피를 목적으로 검사 결과, 생산 수량, 입출고 기록, 비용 전표 등을 조작·누락·은폐하는 행위는 엄중 처벌 대상이 된다.

제 8 조 (안전 규정 및 표준 작업 준수)

1. 현장 임직원은 작업 표준서, 안전 작업 절차 및 보호구 착용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2. 공기 단축이나 편의를 이유로 안전 절차를 임의 생략하거나 비인가된 장비 조작을 해서는 안 된다.
3. 안전 사고 또는 아차사고(Near Miss) 발생 시, 이를 축소하거나 은폐하지 않고 정해진 보고 체계에 따라 즉시 보고해야 한다.

제 9 조 (회사 자산 및 정보 보호)

1. 임직원은 회사의 유형 자산(원자재, 설비, 공구, 비품 등)을 철저히 관리하며, 무단 반출이나 훼손, 사적 전용을 금지한다.
2. 제조 기술, 공정 노하우, 원가 정보, 고객 정보 등 회사의 기밀 정보를 외부나 제 3 자에게 무단 유출해서는 안 된다.

제 4 장 상호 존중과 건강한 조직문화

제 10 조 (차별 및 괴롭힘 금지)

1. 임직원은 성별, 연령, 학력, 출신지, 직종, 고용형태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
2. 직장 내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직장 내 괴롭힘, 폭언, 폭행, 성희롱 등)를 엄격히 금지한다.

제 11 조 (건전한 동료 관계)

1. 임직원 상호 간에는 상호 존중의 언어를 사용하며, 사적인 금전 대차, 불건전한 도박 행위, 무리한 경조사 요구를 금지한다.

제 5 장 신고제도 및 제보자 보호

제 12 조 (위반 행위의 상담 및 제보)

1. 임직원은 본 지침에 위배되는 행위를 인지하였거나 강요받았을 경우, 지체 없이 주관부서(신문고/핫라인)에 제보하거나 상담을 신청해야 한다.
2. 회사는 임직원이 시공간의 제약 없이 접수할 수 있도록 익명 제보 채널(온라인, 직통 전화 등)을 상시 운영한다.

제 13 조 (제보자 보호 및 비밀 보장)

1. 회사는 제보자의 신원 및 제보 내용에 대하여 철저한 비밀을 유지한다.
2. 제보자는 정당한 제보를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 징계, 따돌림 등 어떠한 차별 대우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3. 제보자에 대한 보복 행위가 확인될 경우, 회사는 이를 중대한 비위 행위로 간주하여 가해자에게 가중 징계를 부과한다.

제 6 장 위반 시 조치 및 보칙

제 14 조 (위반 시 조치)

1. 본 지침을 위반한 임직원에 대해서는 사내 취업규칙 및 상벌규정에 따라 징계 처분을 내릴 수 있다.
2. 위반 행위가 형사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 사내 징계와 별도로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제 15 조 (교육 및 서약)

1. 회사는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연 1 회 이상 윤리경영 실천 교육을 실시한다.
2. 전 임직원은 매년 본 지침의 내용을 숙지하고 준수할 것을 다짐하는 '윤리실천서약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1. **(시행일)** 본 지침은 2026 년 11 월 1 일부터 제정하여 시행한다.

D&K켐텍